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우리시 규제개혁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탁운영 결정통지기간을 정하고 계약사항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탁운영 결정통지기간을 명시함.

○ 위탁계약사항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는 노인·아동복지회관의 수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서 접수후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수탁자의 위탁기간, 관리책임등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운영이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